

별첨4 채용비위 피해자 이의신청 및 구제 절차

□ [1단계] 이의 신청 및 처리

- ① 채용비위 피해자는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단 채용 담당부서에 제출함으로써 이의신청할 수 있다.
- ②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이를 감사부서에 전달하도록 한다.
- ③ 감사부서는 이의신청 사안에 대하여 조사 후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인사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한다.
- ④ 인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 ⑤ 이사장은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1)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 2) 평가 관련 개인정보(응시자, 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3)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2단계] 피해자 구제

○ 채용비위 피해자는 다음 표에 따라 처리한다.

구 분	피해발생 단계	처리방법
① 피해자 특정 가능 : 직접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의 바로 다음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최종 면접단계 피해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1차 면접단계 피해	해당 피해자 최종 면접 심사 응시 기회 부여
	필기단계 피해	해당 피해자에게 1차 면접 심사 응시 기회 부여
	서류단계 피해	해당 피해자 1차 면접 심사 응시 기회 부여
② 피해자 특정 불가능 :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그룹을 대상으로 피해발생 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최종 면접단계 피해	피해자 그룹 최종 면접심사 재실시
	1차 면접단계 피해	피해자 그룹 1차 면접심사 재실시
	필기단계 피해	피해자 그룹 필기시험 재실시
	서류단계 피해	피해자 그룹 서류심사 재실시

※ 채용비위 피해자 :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 단계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 자